



제 429회 국회 (정기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납품대금 연동 탈법행위 구체화 및
연동 요청에 따른 불이익 금지 조항 신설〉
■ 송재봉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8203호)

2025. 9.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문위원 성 소 미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2
1. 위탁기업의 납품대금 연동 탈법행위 구체화	2
2. 납품대금 연동 요청에 따른 불이익 금지 조항 신설	7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송재봉의원 등 10인
2. 발의연월일 : 2025. 2. 17.
3. 회부연월일 : 2025. 2. 18.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탁·위탁거래 시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적은 약정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하도록 하되, 위탁기업이 소기업인 경우, 단기거래나 소액 거래인 경우, 수탁기업과 위탁기업 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납품대금 연동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납품대금 연동을 피하려는 목적으로 하나의 수탁·위탁거래를 단기간 또는 소규모로 나누어 위탁하는 일명 ‘쪼개기 계약’ 등 탈법행위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제재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납품대금 연동을 피하기 위한 탈법행위 유형을 수탁·위탁거래를 나누어 체결하는 행위 또는 납품대금 연동을 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를 요구하는 행위 등으로 구체화하고, 수탁기업이 납품대금 연동을 요청했다는 이유로 거래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납품대금 연동제의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25조제1항제14호다목 신설).

Ⅲ. 검토의견

1. 위탁기업의 납품대금 연동 탈법행위 구체화

개정안은 수탁·위탁거래에 관한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납품대금 연동 등을 피하려는 행위(이하 “탈법 행위”라 함)를 구체화하여 규정하고 있음(안 제21조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현행	개정안
제21조(약정서의 발급) ① ~ ③ (생략)	제21조(약정서의 발급)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위탁기업은 납품대금 연동과 관련하여 수탁·위탁거래에 관한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조의 적용을 <u>피하려는</u>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 ----- ----- ----- -- <u>피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u> ----- -----.
<신설>	1. <u>동일한 물품등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기간 또는 납품대금이 각각 제3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도록 나누어 수탁·위탁거래를 하는 행위</u>
<신설>	2. <u>납품대금 연동을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합의를 요구·유도하는 행위</u>
<신설>	3. <u>그 밖에 납품대금 연동을 피하기</u>

⑤・⑥ (생략)	위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⑤・⑥ (현행과 같음)
----------	---------------------------------------

현행법은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협의하여 정한 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것을 ‘납품대금 연동¹⁾’이라 정의하고,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물품등의 제조를 위탁할 때에는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약정서를 발급하도록 의무화²⁾하고 있음.

- 1)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2. “대기업”이란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을 말한다.
 4. “수탁·위탁거래”란 제조, 공사, 가공, 수리, 판매, 용역을 업(業)으로 하는 자가 물품, 부품, 반제품(半製品) 및 원료 등(이하 “물품등”이라 한다)의 제조, 공사, 가공, 수리, 용역 또는 기술개발(이하 “제조”라 한다)을 다른 중소기업에 위탁하고, 제조를 위탁받은 중소기업이 전문적으로 물품등을 제조하는 거래를 말한다.
 5. “위탁기업”이란 제4호에 따른 위탁을 하는 자를 말한다.
 6. “수탁기업”이란 제4호에 따른 위탁을 받은 자를 말한다.
 13. “납품대금 연동”이란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협의하여 정한 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 2) 제21조(약정서의 발급) ①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물품등의 제조를 위탁할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약정서를 그 수탁기업에 발급하여야 한다.
 1. 위탁의 내용
 2. 납품대금(지급 방법 및 지급기일을 포함한다)
 3. 납품한 물품등의 검사 방법
 4. 납품대금 연동의 대상인 물품등의 명칭, 주요 원재료, 조정요건, 기준 지표 및 산식 등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5. 그 밖에 약정서에 적어야 할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위탁기업은 약정서에 제1항제4호의 사항을 적기 위하여 수탁기업과 성실히 협의하여야 한다.
 - ③ 위탁기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제4호의 사항을 약정서에 적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그 취지와 사유를 약정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1. 위탁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2. 수탁·위탁거래의 기간이 90일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인 경우
 3. 납품대금이 1억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4.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납품대금 연동을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경우
 - ④ 위탁기업은 납품대금 연동과 관련하여 수탁·위탁거래에 관한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조의 적용을 피하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의 상생협력 및 수탁·위탁거래의 공정화를 위

그런데 현행법 제21조제3항은 위탁기업이 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제1호), 수탁·위탁거래의 기간이 90일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인 경우(제2호), 납품대금이 1억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제3호),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납품대금 연동을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하는 경우(제4호)에는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약정서에 적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실제 현장에서는 수탁·위탁거래를 단기간 또는 소규모로 나누어 위탁하는 분할 계약 등의 탈법행위가 발생하거나, 위탁기업이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여 합의를 유도하게 되는 유인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를 방지하기 위해 현행법 제21조제4항은 위탁기업이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납품대금 연동제 등을 회피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탈법행위를 명시하고 있지 않아 실제 법 적용 과정에서 거래상 지위의 남용 사례 등에 대한 예측가능성 및 명확성이 떨어지고, 이로 인해 실효성이 제한될 우려가 있을 수 있음.

이에 개정안은 납품대금 연동 제도의 적용을 면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동일한 거래를 분할하여 체결하거나(안 제1호), 납품대

하여 제1항제4호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관한 표준약정서를 제정 또는 개정하고, 그 사용을 권장하여야 한다.

⑥ 위탁기업은 수탁기업으로부터 물품등을 받으면 물품등의 검사 여부에 관계없이 즉시 물품 수령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금 연동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합의를 요구 또는 유도하는 행위(안 제2호),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안 제3호) 등과 같이 납품대금 연동 제도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행위를 구체화하여 규율·금지하고 있으므로, 이를 통해 납품대금 연동 제도의 실질적 운용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³⁾⁴⁾.

참고로, 현행 중소벤처기업부훈령인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지침」은 탈법행위의 예시로, ① 연동제 관련 의무를 회피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거래 기간을 90일 이하로 분할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② 의도적으로 납품대금을 1억원 이하로 분할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③

3) <비교 입법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⑤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 연동과 관련하여 하도급거래에 관한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조의 적용을 피하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비교 입법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부당하게 목적물등과 같거나 유사한 것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이하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이라 한다)하거나 하도급받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는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으로 본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2. 협조요청 등 어떠한 명목으로든 일방적으로 일정 금액을 할당한 후 그 금액을 빼고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3.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수급사업자를 차별 취급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4. 수급사업자에게 발주량 등 거래조건에 대하여 착오를 일으키게 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견적 또는 거짓 견적을 내보이는 등의 방법으로 수급사업자를 속이고 이를 이용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5. 원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6. 수의계약(隨意契約)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직접공사비 항목의 값을 합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7. 경쟁입찰에 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8. 계속적 거래계약에서 원사업자의 경영적자, 판매가격 인하 등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수급사업자에게 불리하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미연동 합의를 강요하거나 상대방이 수용하기 곤란한 과도한 내용을 요구하는 경우 등을 규정하고 있음⁵⁾).

이에 대하여 **중소벤처기업부**는 개정안에 따른 경우 각각의 구체적인 탈법행위에 대한 입증책임이 현행법 제25조의2의 위탁기업의 입증책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위탁기업에게 즉시 전환된다는 장점이 있고⁶⁾, 탈법행위 시 과태료 부과⁷⁾ 등 침익적 처분이 가능한 만큼 해당

5)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지침」

V. 탈법행위의 금지 (법 제21조 제4항)

1. 위탁기업은 납품대금 연동과 관련하여 수탁·위탁거래에 관한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납품대금 연동 약정 체결을 피하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위탁기업이 납품대금 연동 약정체결을 회피하기 위하여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미연동 합의를 강요 또는 유도하거나 연동약정 예외에 해당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3. 연동제와 관련한 위탁기업의 탈법행위 예시
 - 가.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게 연동을 하지 않기로 합의하지 않는 경우 더 이상 거래관계를 유지하지 않겠다는 등 불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처럼 하여 미연동합의를 강요하는 행위
 - 나.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게 연동을 하지 않기로 합의하는 경우에만 거래를 개시하겠다는 등 거래개시 요건으로서 미연동합의를 강요하는 행위
 - 다. 수탁기업이 연동제 적용 의사를 철회하지 않으면 낙찰자로 선정하지 않겠다는 등 위탁기업이 계약체결 요건으로서 미연동합의를 강요하는 행위
 - 라.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게 연동을 하지 않기로 합의하는 경우 연동을 하기로 합의한 업체보다 더 많은 물량을 배정하겠다는 등 사실상 미연동합의를 유도하는 행위
 - 마. 위탁기업이 수년 동안 1년 단위 자동 갱신 방식으로 수위탁계약을 유지해 왔거나 계약의 성질상 계속적 거래가 예상되에도 연동제 관련 의무를 회피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거래 기간을 90일 이하로 분할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 바. 위탁기업이 수년 동안 수억 원의 수위탁계약을 유지해 오다가 연동제 관련 의무를 회피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납품대금을 1억 원 이하로 분할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 사. 위탁기업이 연동제 관련 의무를 회피하기 위하여 주요 원재료에 해당하지 않도록 실질적으로 동일한 원재료임에도 별개의 원재료인 것처럼 분리하여 견적서 등에 명시하는 행위
 - 아. 위탁기업이 경쟁입찰 결과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납품대금 연동제를 회피하기 위하여 미연동 합의를 강요하거나 상대방이 수용하기 곤란한 과도한 내용을 요구한 경우
 - 자. 기본계약에서 구체적 거래조건을 설정할 수 있음이 명백함에도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을 회피하기 위하여 연동약정 예외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개별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6) 제25조의2(위탁기업의 입증책임) 제21조제4항, 제25조제1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행위와 관련한 분쟁해결에서 입증책임은 위탁기업이 부담한다.

7) 제43조(과태료) ① < 생 략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생 략 >

2. 제21조제4항을 위반한 자

조항을 명확히 할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입장임.

2. 납품대금 연동 요청에 대한 불이익 금지 조항 신설

개정안은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에 납품대금 연동을 요청했다는 이유로 거래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안 제25조제1항제14호 다목).

현행	개정안
제25조(준수사항) ① 위탁기업은 수탁기업에 물품등의 제조를 위탁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5조(준수사항) ① ----- ----- ----- -----.
1. ~ 13의2. (생략)	1. ~ 13의2. (현행과 같음)
14. 수탁기업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수탁·위탁거래의 물량을	14. ----- -----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7. 4. 18., 2019. 1. 15., 2021. 8. 17., 2025. 1. 21.>

1. 제21조제1항에 따른 약정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자

2.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위탁기업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7. 4. 18., 2017. 11. 28., 2021. 8. 17., 2023. 3. 28.>

1. 제20조의2제5항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지 아니한 자

2. 제28조의4에 따른 교육명령 등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39조제1항에 따른 서류를 갖추어 두지 아니하거나 그 서류에 거짓 사항을 적은 자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0. 1. 27., 2013. 8. 6., 2017. 4. 18., 2017. 7. 26., 2021. 8. 17.>

줄이거나 수탁·위탁거래의 정지 또는 그 밖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 가.·나. (생략) <u><신설></u> ② ~ ④ (생략)	----- ----- 가.·나. (현행과 같음) <u>다. 위탁기업에 납품대금 연동을 요청하는 행위</u> ② ~ ④ (현행과 같음)
--	--

현행법 제25조제1항제14호는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의 준수사항 위반을 관계기관에 고지하거나 현행법에 따른 납품대금 조정신청 또는 분쟁 조정신청을 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⁸⁾.

개정안은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에 납품대금 연동을 요청하였다는 이유로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같은 호에 다목을 신설함으로써 납품대금 연동 제도가 수탁기업과 위탁기업 간에 실질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보임.

다만, 현행법 제40조의2제2항은 위탁기업이 제25조제1항제14호의 각 목을 위반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 배상책임과 그 범위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음⁹⁾. 이를 고려할 때, 개정안에 따라 다목을 신설할

8) 제25조(준수사항) ① 위탁기업은 수탁기업에 물품등의 제조를 위탁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4. 수탁기업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수탁·위탁거래의 물량을 줄이거나 수탁·위탁거래의 정지 또는 그 밖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

가. 위탁기업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실을 관계 기관에 고지한 행위

1) 제1호, 제1호의2, 제2호부터 제13호까지 및 제13호의2에 해당하는 행위

2) 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

나. 제22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의 위탁기업에 대한 납품대금의 조정신청 또는 같은 조 제8항의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 대한 분쟁 조정신청

경우, 이에 대응되는 배상책임의 범위를 정하여 명시하는 방향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중소벤처기업부는 개정안에 따라 수탁기업의 납품대금 연동 약정 요구를 이유로 물량을 줄이거나 거래의 정지 등 불이익을 주는 위탁기업의 보복행위를 금지 및 제재하고, 수탁기업이 향후 불이익을 우려하여 납품대금 연동을 요청하지 않는 경우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동 개정안과 유사하게 하도급 관계에서 하도급대금 연동을 요청하는 행위에 대한 보복을 금지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¹⁰⁾에 대하여 납품대금 연동 관련 약정서를 발급하지 않거나(과태료 1천만원), 부정한 방법으로 미연동합의를 강요·유도(과태료 5천만원)하는 경우 제재가 가능하여 입법의 실익이 크지 않다는 의견으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¹¹⁾와 제43조¹²⁾에도 동일한 처벌 조항이 규정되어

9) 제40조의2(손해배상책임) ② 위탁기업이 제25조제1항제1호·제3호·제7호·제14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위탁기업이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5조제1항제1호·제3호·제7호·제14호가목1) 또는 같은 호 나목을 위반한 경우: 손해를 입은 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 이내
2. 제25조제1항제14호가목2) 또는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한 경우: 손해를 입은 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5배 이내

10) 의안번호 2210871, 김원이의원 대표발의(2025.6.16.)

11)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약정서의 발급) ①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물품등의 제조를 위탁할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약정서를 그 수탁기업에 발급하여야 한다.

4. 납품대금 연동의 대상인 물품등의 명칭, 주요 원재료, 조정요건, 기준 지표 및 산식 등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있음.

문 의 처
02) 6788-5463

④ 위탁기업은 납품대금 연동과 관련하여 수탁·위탁거래에 관한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조의 적용을 피하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2)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43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21조제4항을 위반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1조제1항에 따른 약정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자